

단체협약 신규조문 대비표

기 존	갱 신
<p>제27조(육아 및 난임휴직) ① 회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자녀 포함)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 단, 여직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중인 직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2회에 한해 분할 사용 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(육아 및 난임휴직) ① 회사는 <u>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</u>하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자녀 포함)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 단, 여직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중인 직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2회에 한해 분할 사용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55조(근무시간)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노사협의로 시·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시·종업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출근일의 경우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.</p>	<p>제55조(근무시간)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노사협의로 시·종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본인의 시·종업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<u>4주 160시간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<u>4주 단위로</u> 선택할 수 있다. 다만, 출근일의 경우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.</p>
<p>제62조(휴가) ① <생략> 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<생략> 5. 청원휴가 가. 결혼 (1) 본인 : 7일</p> <p>다. 사망 (1) 배우자/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/승중상 : 6일 (2) 자녀/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/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: 5일</p> <p>마. 출산 및 유산 (1) <생략> (2) 배우자 출산 시 : 10일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/ 유급)</p>	<p>제62조(휴가) ① <생략> 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. <u>단, 제5호의 청원휴가기간 산정에 있어 가목에 따른 본인 결혼, 다목에 따른 배우자 /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/ 자녀의 사망, 마목에 따른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대상일수를 부여한다.</u></p> <p>1. ~ 4. <생략> 5. 청원휴가 가. 결혼 (1) 본인 : 7일</p> <p>다. 사망 (1) 배우자/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/승중상/<u>자녀</u> : 6일 (2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/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: 5일</p> <p>마. 출산 및 유산 (1) <생략> (2) 배우자 출산 시 : 10일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/ 유급 / <u>1회 분할 사용가능</u>)</p>